



교육감 규정

번호: A-190

제목: 한 개 이상의 학교를 유치한 학교 건물 활용 및 관리 절차의 중대한 변경

항목: 학생

발행: 2019 년 8 월 1 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10 년 10 월 7 일자 교육감 규정 A-190 을 대체한다.

변경 내용:

- “학교 활용의 중대한 변화”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 I.G).
- 해당되는 커뮤니티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정책 패널측에 학교 폐교안 또는 활용상의 중대한 변화안에 관한 합동 공청회 이후 제안된 내용을 추천할지 추천하지 않을지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한다 (§ II.B.5).
- 교육 정책 패널이 해당 커뮤니티 교육위원회에서 본 규정 § II.B.5 에 의거하여 통과시킨 결의안에 대하여 커뮤니티 교육위원회가 추천하지 않기로 한 내용을 승인할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한다.
- 본 규정 관련 문의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갱신한다 (§ V).
- 기술적이고 내용상의 큰 변화 없이 언어를 통일시키고 용어를 갱신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교육감 규정

번호: A-190

제목: 한 개 이상의 학교를 유치한 학교 건물 활용 및 관리 절차의 중대한 변경

항목: 학생

발행: 2019 년 8 월 1 일

요약

본 규정은 폐교나 학교 활용상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교육감 제안에 관한 대중의 검토와 의견 제시에 관한 내용 및 이러한 제안에 관한 뉴욕시 교육 위원회(이후 교육 정책 패널(PEP))의 승인 절차를 적시한다. 더 나아가 본 규정은 기존 공립 학교 건물에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차터스쿨을 공존시키는 것과 관련된 추가 절차 및 요건을 명시한다.

I. 정의

- A. 초등학교, 중등 및 중학교과 관련된 제안에서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 학교 학군”이란 제안의 대상이 되는 학교가 위치한 커뮤니티 학교 학군을 일컫는다. 고등학교의 경우, 이 용어는 제안의 대상이 되는 학교가 위치한 지리적 경계선 내 위치한 커뮤니티 학교 학군을 의미한다.
- B. “영향을 받는 학교” 및 “해당 학교”는 제안 상 직접 조치를 받는 개별 교육 기관 및 제안된 조치의 결과로 새롭게 기존 건물 안에 공존하게 되는 학교들만 의미한다. 어떤 학교의 학년 확장안의 경우, 해당 용어는 확장되는 학교와 함께 위치한 모든 학교를 의미한다.
- C. “영향을 받는 학생” 및 영향을 받는 학부모”란 용어는 학교 폐교안이나 학교 용도 변경안이 제시될 시점에 영향을 받는 학교에 등록된 학생과 학부모들을 일컫는다.
- D.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 교육위원회” 또는 “영향을 받는 CEC 또는 위원회”란 용어는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커뮤니티 교육위원회(CEC)를 일컫는다.
- E. 초,중등 및 중학교에 관한 제안의 경우,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 위원회”에는 영향받는 학교가 위치한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지리적 지역 내에 경계선이 위치하는 커뮤니티 위원회가 포함된다. 고등학교에 관한 제안의 경우, 본 용어는 영향받는 학교가 위치한 지리적 경계 내에 위치한 커뮤니티 학교 학군을 포함한다.
- F. 교육감 규정 A-660 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일관되게 학부모(“parent”)란 단어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학생의 양육이나 보호를 책임진 기타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학부모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된다: 현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의부모, 법으로 정한 보호자, 위탁 부모 및 "양육을 책임진 사람".

- G. “학교 활용의 중대한 변화”에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학교 시설의 단계적 폐교, 학년 재구성, 이전, 학교 또는 75 학군 학교 조직들의 공동 점유 등이 포함된다. “학교 활용의 중대한 변화”에는 현재 학교나 기타 프로그램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시설에서의 학교 기반 프로그램 변경, 조닝라인 변경, 영재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의 배정/지정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설 건물에 새로 개교하는 신설 학교의 공동 점유나 현재 DOE 에 의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타 시설 등도 이 용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H. “자산 개선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란 영구한 효과를 가지는 기존 건물의 증축이나 변경으로 해당 건물의 가치나 미관, 활용도를 높이거나 해당 건물을 새로운 목적에 맞게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축이나 변경은 기존 건물의 일부가 되거나 기존 건물에 영구하게 추가되는 것으로, 이것을 제거하면 건물이나 물건 그 자체에 물리적 손상을 가하게 된다. 앞의 내용에 추가하여 다음은 시설 업그레이드에 해당되는 증축 또는 변경의 비포괄적 목록은 다음과 같다: 바닥재 교체, 전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설비 설치, 윈도우닛 에어 컨디셔너 추가. 제안된 프로젝트가 시설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최종 승인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II. 폐교 및 학교 활용의 중대한 변화에 관한 교육감안의 일반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제시

A. 교육적 영향 성명

1. 교육감이 폐교 또는 학교 활용에 중대한 변화안(예, 단계적 폐교, 학년 재구성, 학교 이전이나 공존)을 제시하고자 할 때 교육적 영향 성명(educational impact statement: “EIS”)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EIS 준비를 위한 권고 가이드가 본 규정 부록 1 로 첨부되었다. 각 제안은 저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EIS 에는 제안을 둘러싼 특정 상황에 맞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EIS 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a. 영향받는 학교의 현재 및 앞으로 예상되는 학생 등록 인원
- b. 장차 예상되는 이러한 학교 건물의 필요성
- c. 이러한 폐교나 활용의 중대한 변화가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 d. 폐교나 활용의 중대한 변화에 드는 초기 비용 및 절감되는 비용
- e. 폐교된 건물의 잠재적 활용성
- f. 본 제안이 영향받는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
- g. 학교 건물을 기타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정 서비스에 이용할 개략적인 활용안이나 잠재적 방안
- h. 폐교나 학교 활용의 중대한 변화가 개인적 필요, 수업 비용, 행정, 교통 및 기타 지원 서비스에 끼치는 영향

- i. 학교 건물의 유형, 연령, 물리적 상태, 관리 상태, 에너지 비용, 최근에 실시된 또는 계획된 학교 건물 개선 및 이러한 건물의 특징
 - j. 폐교나 활용의 중대한 변화 이후 영향받는 커뮤니티 학군의 타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용할 능력
 - k. 학교의 학업적 수행도에 관한 정보, 이 학교가 지속적으로 저수행도를 보이는 학교, 등록 검토 중인 학교 및/또는 차별화된 책임 상태(개선 필요, 교정조치, 또는 재개편) 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
2. 기존 공립 학교 건물에 차터스쿨 배치 및/또는 공존과 관련된 EIS
- a. 기존 공립 학교 건물에 차터스쿨 배치 및/또는 공존 제안 시 EIS 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i. 이 공립학교 건물이 차터 스쿨의 배치나 공존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
 - ii. 건물 활용 계획,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건물 활용 계획 작성 가이드는 본 규정에 부록 2 로 첨부):
 - a) 차터 스쿨 및 비 차터 학교(들) 간의 교실 및 행정 공간 실제 할당 및 공유안 이러한 할당 계획에서는 DOE 의 인스트럭셔널 풋프린트(일명 “풋프린트”)에 의거하여 건물 내 각 학교에 배정될 교실의 숫자와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계획에는 풋프린트에 의거하여 할당되지 않는 교실의 숫자와 유형도 명시해야 한다. 풋프린트에 의거하여 할당되지 않은 모든 공간은 공존하는 학교들 간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공평한 분배를 결정함에 있어, DOE 는 공존하는 학교들의 상대적 등록학생 수, 공존하는 학교들의 수업 및 프로그램적 필요, 그리고 건물 내 남는 공간의 물리적 위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b) 차터 스쿨 및 비 차터 학교들간의 공유 자산 및 공간을 협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안, 여기에는 카페테리아, 도서관, 체육관 및 놀이터를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이러한 제안을 통해 차터스쿨 학생들에게 제공된 것과 유사한 방식과 시간으로 비 차터스쿨 학생들에게도 시설을 공평한 접근이 보장된다.
 - c) 본 총칙의 제 (a)및 (b)항에 명시된 배정 및 스케줄 제안의 실행수월성을 뒷받침할 근거 및 이러한 배치 및 공유안이 공립학교 건물의 공평하고 필적할만한 활용을 초래할 것인지 설명.
 - d) 건물 안전 및 보안.

- e) 공존하는 학교들 간에 사용될 커뮤니케이션 전략.
- f) 본 규정 § III.B.1 에 의거하여 공존하는 협력적인 의사 결정 전략 설명, 여기에는 공유 공간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 포함.

iii. 건물 활용 계획 수정안은 뉴욕주 교육법 § 2590-g 제 7 호에 따른 요건에 의거하여 PEP 승인을 요한다.

3. 폐교나 학교 건물 활용의 중대한 변화가 효력을 발생하는 학년도 개학 첫 날로부터 최소 6 개월 이전에 교육감은 DOE 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EIS 를 공고하고 영향받는 학교(들)의 메인오피스(들)에 EIS 사본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교육감은 또한 PEP 와 영향 받은 커뮤니티 교육위원회(“CEC”), 영향 받은 커뮤니티 위원회, 학군장, 영향받은 학교(들)의 스쿨 리더십팀(“SLT”),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CCELL”) 및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CCSE”)에도 EIS 종이 사본을 접수시킨다. 고등학교 관련 제안일 경우, 교육감은 또한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CCHS”)에도 EIS 종이 사본을 접수시키고, 75 학군(“D75”) 학교 기관에 등록된 학생들에게 영향이 있을 경우 교육감은 D75 에도 EIS 사본을 접수 시킨다. 고등학교 관련 제안일 경우, 교육감은 또한 해당 고등학교가 위치한 보로 내 모든 커뮤니티 위원회 및 CEC 에 EIS 사본을 이메일로 전송한다. 적절한 접수 방식으로는 PEP 의장, 영향받는 CEC(들)의 행정 보조(들), 영향받는 커뮤니티 위원회(들)의 회장 또는 대표, 영향받는 학군장(들), SLT 구성원으로서의 영향받는 학교(들)의 교장(들), CCELL 및 CCSE 의 위원장 또는 대표 중 해당되는 사람들, CCHS 및 D75 위원회 또는 대표들에게 EIS 의 종이 사본을 직접 전달 또는 퍼스트 클래스 메일로 우송하는 방법이 있다.
4.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학군장은 모든 영향받는 학부모들에게 직접, 또는 영향받은 학교의 행정부를 통해 이러한 제안 및 후속 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이러한 공고에는 해당되는 경우 EIS 또는 EIS 개정안 사본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 그리고 제안 또는 개정된 제안에 관한 합동 공청회 날짜 및 장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II.B 참고). 제안이 고등학교와 관련된 경우, 영향받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공고는 영향받은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학군장 및 본 제안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고등학교 수퍼인텐던트와 합동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D75 학교 기관에 등록된 영향받은 학생들과 관련된 공고일 경우, 영향받은 학부모들에게 D75 수퍼인텐던트가 공고한다.

B. 합동 공청회

1. 모든 폐교안은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영향받은 CEC 및 폐교안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SLT 를 대상으로 합동 공청회를 개최한다. 학교 활용의 중대한 변화에 관한 모든 제안은 교육감이나 교육감 지명인이 영향받은 CEC 및 제안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SLT 를 대상으로 합동 공청회를 개최한다. CCELL 및 CCSE 도 합동 공청회에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고등학교와 관련된 제안일 경우, CCHS 도 합동 공청회에 참석하도록 초청한다. ID75 학교 기관에 등록된 영향받은 학생들과 관련된 제안일 경우, D75 위원회도 합동 공청회에 참석하도록 초청한다.

2. 합동 공청회 일정 정하기

- a. 이러한 합동 공청회는 EIS 가 접수된지 삼십(30)일보다는 이르지 않게, 그러나 사십오(45)일보다는 늦지 않게 개최한다.
- b. EIS 접수 전, 교육감 지명인이나 부서에서는 영향받은 CEC 및 SLT 구성원 자격으로서의 영향받은 학교의 교장, CCELL 및 CCSE 위원장 또는 대표, 그리고 제안이 D75 학교 기관에 등록된 영향받은 학생이나 고등학교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되는 대로 CCHS 및 D75 위원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합동 공청회의 잠정적인 일시를 제안한다. 이 각 집단은 제안받은 일시에 공청회 참석 가능 여부 및 대안 일자를 제시한다. EIS 접수 전 공청회 일자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감 지명인은 적용 가능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날짜로 공청회 일자를 선택한다.

3. 합동 공청회 안건

- a. 합동 공청회 전, 교육감 지명인이나 부서에서는 영향받은 CEC 및 영향받은 학교의 교장, 영향받은 학교의 SLT 구성원 자격으로서의 교장, CCELL 및 CCSE 위원장 또는 대표, 그리고 제안이 D75 학교 기관에 등록된 영향받은 학생이나 고등학교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되는 대로 CCHS 및 D75 위원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합동 공청회 잠정 안건을 전송한다. CEC, SLT, CCELL, CCSE 및 CCHS 및/또는 D75 위원회는 해당되는 대로, 합동 공청회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한 안건 변경을 제안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 b. 이러한 안건에는 학교 활용의 중대한 변화에 관한 제안일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감 지명인에 의한 제안의 간략한 프레젠테이션이, 학교 폐교안일 경우,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에 의한 간략한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건에는 영향받은 CEC, 영향받은 학교(들)의 SLT, 및 CCELL, CCSE, CCHS 및/또는 D75 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대로 간략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안건 내용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영향받은 CEC, 영향받은 학교(들)의 SLT 및 해당되는 대로 CCELL, CCSE, CCHS 및/또는 D75 위원회에서는 교육감, 교육감 지명인 또는 부교육감 등이 상기 명시한 대로 간략한 제안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에 각자 적당한 할당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감, 교육감 지명인 또는 부교육감 CEC, SLT, CCELL, CCSE, CCHS, 또는 D75 위원회에

의한 프레젠테이션은 상식적인 수준의 길이여야 하며, 일반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침해할 정도로 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육감은 DOE 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합동 공청회 공고를 게시하고 모든 영향받은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공지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감은 영향받은 커뮤니티 학군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위원회 및 선출직 주, 지방 공직자들에게도 공지한다. 해당 제안에 관심있는 모든 당사자들은 이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5. 이러한 합동 공청회에서 영향받은 CEC 는 학교활용에 중대한 변화안 또는 폐교안을 PEP 에 추천할 것인지 추천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것을 PEP 에서 본 규정 제 II.C 항에 의거하여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최소 칠(7)일 이전에 PEP 에 보내서, CEC 로부터의 본 결의안 접수가 PEP 가 이 문제에 대응하는 사전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한다.
6. 대중의 의견을 접수한 후, 교육감은 최초의 EIS 에 명시된 학교 이외 다른 학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권한으로 학교 활용 변화 또는 폐교안을 상당 부분 수정할 수 있다. 교육감이 제안을 상당 부분 수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본 규정 제 § II.A.1 항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EIS 수정본을 작성해야 한다. EIS 수정본은 DOE 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사본은 영향받은 CEC, 영향받은 커뮤니티 위원회, 학군장, 영향받은 학교의 SLT, 해당되는 경우 CCHS 및/또는 CCSE 와 D75 위원회에 § II.A.3 에 명시된 방식으로 접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EIS 수정본이 접수된지 15 일 이후,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또는 학교활용의 중대한 변화에 관한 건인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감 지명인은 뉴욕주 교육법 제 § 2590-h(2-a)(d-1)에 의거하여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C. PEP 승인

1. 교육감은 모든 학교 활용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제안이나 폐교안을 PEP 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학교 활용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제안이나 폐교안을 PEP 에서 승인하기 전에, 일반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안에 관한 PEP 의 투표가 실시되기 사십오(45)일 전, PEP 에서는 해당 제안에 관한 공고를 DOE 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특히 이 공고를 모든 학군장들과 CEC, 커뮤니티 위원회 및 SLT 들이 회람하도록 한다. 이러한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제안의 주제, 목적, 내용에 관한 설명.
 - b. EIS 전문을 입수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
 - c. 현재 검토중인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해당 제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뉴욕시 학군 담당자의 이름, 담당실,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d. 본 제안에 관한 모든 공청회 날짜, 시간 및 장소.
 - e. 본 제안을 놓고 PEP 가 찬반투표를 실시할 PEP 회의 일자, 시간 및 장소.
 - f. 본 제안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상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3. 학교 활용의 중대한 변화나 폐교에 관한 교육감 제안이 PEP 에 의해 일반에 공고된 후 크게 수정되었다면, PEP 에서는 수정된 공고를 PEP 투표가 있기 최소 십오(15)일 전에 발표해야 한다. 수정된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a. 수정된 제안의 주제, 목적, 내용에 관한 설명.
 - b. 제안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적시.
 - c. 제안에 관한 최초 공시 이후 접수된 일반 대중 의견 요약.
 - d. 개정된 EIS 전문을 입수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
 - e. 현재 검토중인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해당 제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뉴욕시 학군 담당자의 이름, 담당실,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f. 개정된 제안에 관한 모든 공청회 날짜, 시간 및 장소.
 - g. 개정된 제안을 놓고 PEP 가 찬반투표를 실시할 PEP 회의 일자, 시간 및 장소.
 - h. 본 제안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상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4. 일반 대중의 의견 제시 기간이 지나고 PEP 가 투표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 사이, PEP 는 DOE 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PEP 회의에서 제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이십사(24)시간 전까지 접수된 모든 일반 의견 평가를 게시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제기된 사안의 분석 및 제안된 것 중 의미있는 대안에 관한 요약
 - b. 의미 있는 대안들을 제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사유
 - c. 접수된 일반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된 제안 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
 - d. EIS 또는 개정된 EIS 전문을 입수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
5. 영향받은 CEC 에서 본 규정 § II.B.5 에 의거하여 추천하지 않기로 결의한 제안을 PEP 에서 승인하는 경우, PEP 는 CEC 측에 이러한 결정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6. 본 규정에 의거하고 PEP 에 의해 승인된 제안은 본 규정의 모든 적용 가능한 조항이 충족되기 전에는, 그리고 PEP 승인이 해당되는 학년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III. 하나 이상의 학교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공립 학교 건물의 관리 절차

A. 빌딩 위원회

1. 빌딩 위원회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학교들이 공존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학교들이 D75 학교 기관과 공존하는 모든 공립학교 건물에 두어야 한다. 빌딩 위원회는 공존하는 각각의 차터 학교 또는 D75 학교 기관의 학교장(또는 D75 학교 기관의 교감), 및 공존하는 각 차터 스쿨에서 지정한 대표로 구성된다. 이들은 최소 월 1 회

만나 제기된 문제가 있을 경우 건물 내 모든 학교 및 프로그램들이 매일 원만하게 운영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의한다. 어떤 문제에 관해 빌딩 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캠퍼스 정책 각서 및 절차(<https://www.schools.nyc.gov/about-us/school-planning/campus-governance>)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가 적용된다.

2. 건물 위원회에는 회의 안건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해당 학교 건물 관리와 연관된 모든 기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보관 방식은 캠퍼스 정책 각서 및 절차(<https://www.schools.nyc.gov/about-us/school-planning/campus-governance>)에 나온 방식에 따른다.

B.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차터 스쿨이나 특정 D75 학교 기관과 공존하는 차터스쿨

1. 공유 공간 위원회

-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차터스쿨들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차터 학교 또는 D75 학교 기관과 공존하는 모든 공립학교 건물에는 공유 공간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공유 공간 위원회는 공존하는 각 학교 또는 D75 학교 기관의 학교장(D75 학교 기관일 경우 교감), 교사 및 학부모로 구성된다. 비차터 학교의 교사 및 학부모의 경우, 공유 공간 위원회 위원은 해당 학교 SLT의 해당되는 팀원에 의해 선정된다.
- a. 이 위원회는 한 학년도 동안 최소 4 회 만나야 한다. 2010년 5월 28일 이후 PEP에 의해 공립학교 배치나 공동배치가 승인된 차터스쿨의 경우, 공유 공간 위원회는 PEP에서 승인한 건물 활용 계획 실행을 심사해야 한다. 2010년 5월 28일 이전 공립학교 배치나 공동배치가 승인된 차터스쿨의 경우, 공유 공간 위원회는 그 빌딩들에서의 현 빌딩 공간 계획의 실행을 심사해야 한다.

2. 주요 개선 및 시설 업그레이드

- a. 교육감이나 교육감 지명인은 공립 학교 건물에 차터스쿨을 공존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5천 달러 초과 주요 개선이나 시설 업그레이드 제안에는 예산출처에 관계없이 반드시 먼저 서면으로 승인해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감 지명인은 교육법 § 2853 제 3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립 학교 건물 내의 각 비차터 학교에 실시해야 하는 주요 개선 및 시설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비용 전체 요청을 접수하는 시점에 이러한 승인에 조건을 둘 수 있다. 제안된 주요 개선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을 산출할 때에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제안된 주요 개선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을 산출할 때에는 단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된 모든 작업과 구매한 모든 물품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이 승인한 모든 개선이나 업그레이드는, 공립 학교 건물 내에 있는 각각의 비차터 학교와 차터스쿨의 지출이 동일한 액수로 이루어 져야 한다. 교육감이 승인한 모든 주요 개선이나 시설 업그레이드 중 비용 출처에 관계 없이 5천 달러를 초과하며 기존

공립학교 건물 내에 이미 위치한 차터스쿨에서 시행된 프로젝트인 경우, 해당 공립학교 건물에 위치한 각 비차터 학교마다 그 건물 내 차터스쿨에 지출된 비용에 상응하는 주요 개선이나 시설 업그레이드가 앞선 프로젝트가 이루어진지 3 달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b. 승인 절차

- i. 모든 주요 개선 및 시설 업그레이드 제안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당 건물의 빌딩 위원회 및 공유 공간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후 학교 계획 및 개발/공간 관리 부, 그리고 학교 시설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제안서는 반드시 학교 계획 및 개발/공간 관리부 및 학교 시설부, 또는 기타 지정된 부서에 해당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최소 15 수업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안된 주요 개선이나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한 차터스쿨의 자금은 제안서 제출 시점이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ii. 학교 계획 및 개발/공간 관리부 또는 그 대리부서에서는 차터스쿨에서 제출한 주요 개선이나 시설 업그레이드 제안을 검토한 후 교육감이나 지명인에게 승인여부를 추천 한다.
- iii. 교육감이나 지명인은 차터스쿨 운영자 및 해당 건물에 공동 위치한 비차터 학교 운영자에게 제안된 주요 개선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안을 승인하는지 거부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통보한다.
- iv. 차터스쿨의 주요 개선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에 관한 본래의 제안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변화 내용을 작업에 반영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지명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v. 교육감이나 지명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요 개선이나 시설 업그레이드를 감행하는 차터스쿨은 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한지 3 개월 이내에 해당 건물 내 각 비차터 학교에 대해 차터스쿨에서 지출한 개선 비용에 맞먹는 시설 개선 기금을 대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감 또한 법에서 인정하는 기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c. 이의 제기:

공립 학교 건물 내에 차터스쿨을 배치하거나 공존 시키려는 제안과 이에 따른 건물 사용 계획이 PEP 에서 승인되면, 제안의 승인 및/또는 승인된 건물 사용 계획의 시행과 준수 등에 관한 이의를 뉴욕주 교육법 § 2853(3)(a-5)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기할 수 있다.

IV. 비상 폐교 및 학교 활용의 중대한 변화에 관한 절차

- A.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안전 또는 전반적인 복지에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로 폐교를 감행하거나 응급으로 학교 활용에 변화를 줄 수 있다.

**A-190 - 한 개 이상의 학교를 유지한 학교 건물 활용 및 관리 절차의 중대한 변경 -
8/1/2019**

- B. 교육감은 이러한 비상조치 사유에 관한 성명서를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성명서를 DOE 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 C. 비상 폐교나 학교 활용의 중대한 변화의 효력은 최대 6 개월 지속되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폐교나 학교 활용에 변화를 지속해야 할 경우 교육감은 본 규정에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V. 문의처

본 규정 관련 문의 연락처:

Division of School Planning and Develop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420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74-3986



단계적 및 궁극적 폐교 대상 학교명 (DBN)

I. 제안 내용 요약

- 식별 정보:
 - o 학교명, 코드, 교육 대상 학년
 - o 커뮤니티 학교 학군, 빌딩 코드 및 주소
 - o 현재 같은 건물에 있는 학교들(있는 경우)
- 본 제안의 결과로서 취해질 조치에 관한 설명:
 - o 매년 점차적으로 없어질 학년(들) 및 학교가 궁극적으로 폐교하는 년도 등을 포함한 본 제안 실행에 관한 정보 제공
- 제안된 조치의 정당성:
 - o 단계적 폐교안을 제시하게 된 책임 기준에 관한 설명
 - o 지속적으로 저수행도를 보이는 학교 지정에 관한 설명(해당되는 경우)
 - o 단계적 폐교 결정에 이르기 전에 DOE가 학교 수행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취한 중대한 조치들이 있었다면 그에 관한 요약
 - o 본 제안이 나온 배경이 된 학교 수행도 및 이러한 추천이 있기 전 지역사회의 개입에 관한 정보

II. 건물 활용 방안 또는 잠정적 활용안

- 건물에 관한 정보:
 - o 수용능력
 - o 현재 활용 상황
- 제안된 건물 활용방안에 관한 설명
 - o 제안된 건물 활용안에 추가 학교를 유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경우, 학교 유치에 관해서는 EIS 참고

III. 본 제안이 해당 학생, 학교 및 지역사회에 주는 영향

a. 학생

- 단계적 폐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
 - o 특수교육 (SE) 및 영어학습학생(ELL) (ELL)에게 끼칠 영향에 관한 설명과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해당되는 경우)
 - o 현재 학교 건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제공 가능한 등록 옵션에 관한 설명(전학 기회 여부 포함)
 - o 본 제안의 일부로서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중학교 초이스 프로그램 및 SE & ELL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설명(해당되는 경우)
 - o 해당되는 경우, 본 제안의 일부로서 해당 학교에서 시행되는 기타 중대한 프로그램 상의 변화
- 단계적 폐교 대상 학교에 앞으로 등록하게 되었을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

- 본인의 고등학교 지원서에서 단계적 폐교 대상 학교를 지망한 학생들이 취해야 할 다음 단계에 관한 설명
- 해당 학교가 존 스쿨일 경우, 해당 존에 거주하는 가정에 끼치는 영향 설명
- 이러한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설명 단계적 폐교 대상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 내 학교(및 학년들) 목록을 기재하고 각 학교 별로 다음 정보 제시:
 - 성명
 - DBN
 - 주소
 - 등록 데이터
 - 건물 수용 능력/활용
 - 수요 데이터(해당될 경우)
 - 제공되는 프로그램 자격 기준
 - SE 및 ELL 데이터
 - 제공 가능한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또는 중학교 초이스 프로그램(해당될 경우)
 - 장애인 편의시설
 - 책임 정보
-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영향:
 - 단계적 폐교 대상 학교에서 제공되던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및 중학교 초이스 프로그램(해당되는 경우) 명시
 - 유사한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및 중학교 초이스 프로그램(해당되는 경우)을 제공하는 학교(및 학년들) 목록 제시
- 건물이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일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요하는 학생들을 다른 곳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

b. 학교

- 해당 건물 내 학교들에 본 제안이 끼치는 영향:
 - 단계적 폐교의 결과로서 해당 건물 내 소멸되는 정원
 - 건물 활용 예상안
 - 해당 건물 내 신설될 정원
 - 해당 건물 내 신규 학교 유치 방안(별도의 EIS 를 첨부하고 안내). 다음과 같은 정보 포함:
 - 학교명
 - DBN
 - 주소
 - 예상되는 입학생수
 - 선발 기준(있는 경우)
 -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및 중학교 초이스 프로그램(해당되는 경우)의 유형
 - 건물 내 있는 각 학교 별로 본 제안의 결과로서 수업 공간의 할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 또한 본 제안의 결과로서 건물 내 있는 다른 학교 재학생수의 직접적인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설명
 - 해당되는 경우 계획된 주요 개선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제시

c. 지역사회

- 본 제안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설명:
 - 제공 가능한 정원 및 주변 학교에 끼치는 영향:
 - 등록 경향
 - 요구되는 수용인원
 - 단계적 축소 및 폐교의 결과로 지역사회에서 소멸되는 정원 추정치
 - 신규 학교 유치, 학년 확장 및 단계적 학년 유치의 결과로서 지역사회에서 신설되는 정원 추정치
 -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유치하는 학교(및 학년들)의 목록(해당되는 경우) 및 다음 정보 제공:
 - 학교명
 - DBN
 - 주소
 - 예상되는 입학생수
 - 선발 기준(있는 경우)
 -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및 중학교 초이스 프로그램(해당되는 경우)의 유형
 - 이러한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설명 단계적 폐교 대상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 내 학교(및 학년들) 목록을 기재하고 각 학교 별로 다음 정보 제시:
 - 학교명
 - DBN
 - 주소
 - 등록 데이터
 - 건물 수용 능력/활용
 - 수요 데이터(해당될 경우)
 - 제공되는 프로그램 자격 기준
 - SE 및 ELL 데이터
 - 제공 가능한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또는 중학교 초이스 프로그램(해당될 경우)
 - 장애인 편의시설
 - 책임 정보
 - 프로그램 제공 능력에 끼치는 영향:
 - 단계적 폐교 대상 학교에서 제공되던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및 중학교 초이스 프로그램 명시
 - 유사한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및 중학교 초이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들 목록
 - 역사 및 지역사회 활용
 - 개교 시 상태
 - 제시된 폐교안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교육법 제 414 항에 의거하여 학교 건물 사용 허가를 받는데 주는 영향이 있다면 이에 관한 설명

IV. 등록, 입학 및 학교 수행 정보

- 영향 받은 각 학교 별로 다음과 같은 정보 제공:

- 등록 데이터
 - 현재 재학생 수 및 교육하는 학년
 - 신설 학교 학생 수 전망치(해당되는 경우)
 - 입학 및 지원자격 기준
 - 인구 정보
 - 폐교 대상 학교에서 단계적 폐교 조치가 시작되는 해부터 완전 폐교하는 해까지 매년 교육대상 학년 및 예상되는 재학생 수
- 수행 데이터:
 - 진척 보고서 성적
 - 졸업률 및/또는 ELA/수학 점수
 - 주 책임 현황
 - 평균 출석률 및 출석 리포트 링크

V. 초기 비용 및 절감 비용

- 학교들의 예산 구성에 관한 정보 제공
- 이전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해당되는 경우)

VI. 개인적 필요, 수업, 행정, 교통 및 기타 지원 서비스 비용에 끼치는 영향

a. 개인적 필요

- 본 제안의 결과로서 신설되거나 소멸될 행정직, 비 교직 및 교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
- 학군 및/또는 시스템 내 각 직위에 실제로 끼치는 영향

b. 수업 비용

- 학교에서 수령하게 될 인당 예산 및 추가 기금

c. 행정

- 본 제안의 결과로서 직원 채용 및 신규 채용 증가 또는 감소에 끼치는 영향 설명 채용 감소가 예상될 경우, 기존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d. 교통

- 본 제안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던 통학 교통편(해당되는 경우)에 끼치는 영향

e. 기타 지원 서비스

VII. 건물 정보

- 건물 유형: 1 차, 2 차
- 건축년도

- 전체 BCAS 등급
- 활용 & 수용인원 목표
- FY 2009 관리비용:
 - o 인건비:
 - o 자재비:
 - o 관리 및 보수 계약:
 - o 서비스 계약:
 - o 청소비 (재료비, 청소원 배정):
- FY 2009 에너지 비용:
 - o 전기
 - o 가스
 - o 기름
- 현재 또는 전 학년도에 완성된 프로젝트
- 캐피탈 플랜에 제안된 프로젝트들:
-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인 경우 표시:
- 건물 시설 목록: 체육관, 강당, 과학실험실, 카페테리아, 도서실



기존 학교명(들)(DBN) 과 신규 학교명(들)(DBN)의 공동 유치

I. 제안 내용 요약

- 식별 정보:
 - 신규 학교명, 코드, 차터 또는 비차터 상태 및 교육 대상 학년
 - 시행 첫 해 및 차후 단계적으로 신규 학교에 예상되는 재학생 수
 - 차터 스쿨인 경우 승인 기관
 - 기존 학교명(들), DBN, 교육 대상 학년
 - 커뮤니티 학교 학군, 빌딩 코드 및 주소
- 본 제안의 결과로서 취해질 조치에 관한 설명:
 - 학년(들), 신규 학교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추가될 학생수 등을 포함하여 본 제안의 시행에 관한 정보
- 신규 학교에 대한 설명
- 제안된 조치의 정당성
 - 학교 공동 유치의 필요성과 본 제안이 그러한 필요를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관한 설명

II. 건물 활용 방안 또는 잠정적 활용안

- 건물에 관한 정보:
 - 수용능력
 - 현재 활용 상황
- 제안된 건물 활용방안에 관한 설명

III. 본 제안이 해당 학생, 학교 및 지역사회에 주는 영향

a. 학생

- 건물 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
 - 특수교육 (SE) 및 영어학습학생(ELL) (ELL)에게 끼칠 영향에 관한 설명과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해당되는 경우)
 - 본 제안의 일부로서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중학교 초이스 프로그램 및 SE & ELL 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설명(해당되는 경우)
 - 해당되는 경우, 기타 중대한 프로그램 상의 변화

b. 학교

- 해당 건물 내 학교들에 본 제안이 끼치는 영향:
 - 건물 내 있는 각 학교 별로 본 제안의 결과로서 수업 공간의 할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 또한 본 제안의 결과로서 건물 내 있는 다른 학교 재학생수의 직접적인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설명
 - 제안된 공존기간 또는 신규 학교가 완전히 정원수를 채울 때까지 기존 학교(들) 및 신규 학교의 제안된 공간 할당에 관한 설명 포함. 신규 학교가 차터 스쿨일 경우, 건물 활용 계획안 포함
 - 각 학교별 특수 교실(예, 컴퓨터랩, 과학 실험실)의 장애인 편의시설
 - 체육관, 카페테리아, 도서실 및 놀이터 등의 공유 공간에 끼치는 영향 설명. 이러한 공간이 제안된 공존 학교들 간에 어떻게 공유될 지에 관하여 포함
 - 건물의 안전 및 보안 계획에 끼치는 영향 설명
 - 해당되는 경우 계획된 주요 개선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제시

c. 지역사회

- 본 제안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설명:
 - 제공 가능한 정원 및 주변 학교에 끼치는 영향:
 - 등록 경향
 - 요구되는 수용인원
 - 신규 학교 유치, 학년 확장 및 단계적 학년 유치의 결과로서 지역사회에서 신설되는 정원
 - 프로그램 제공 능력에 끼치는 영향:
 - 신규 학교에서 제공되는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및 중학교 초이스 프로그램 명시
 - 제안된 학교의 공존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교육법 제 414 항에 의거하여 학교 건물 사용 허가를 얻는데 끼칠 효과(있는 경우) 설명

IV. 등록, 입학 및 학교 수행 정보

- 영향 받은 각 학교 별로 다음과 같은 정보 제공:
 - 등록 데이터
 - 현재 재학생 수 및 교육하는 학년
 - 신설 학교 학생 수 전망치(해당되는 경우)
 - 입학 및 지원자격 기준
 - 인구 정보
 - 폐교 대상 학교의 단계적 폐교 조치가 실행되는 해부터 완전 폐교되는 해까지 매년 교육 대상 학년과 예상 재학생 수
 - 수행 데이터:

- 진척 보고서 성적
- 졸업률 및/또는 ELA/수학 점수
- 주 책임 현황
- 평균 출석률 및 출석 리포트 링크

v. 초기 비용 및 절감 비용

- 학교들의 예산 구성에 관한 정보 제공
- 이전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해당되는 경우)

vi. 개인적 필요, 수업, 행정, 교통 및 기타 지원 서비스 비용에 끼치는 영향

a. 개인적 필요

- 본 제안의 결과로서 신설되거나 소멸될 행정직, 비 교직 및 교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
- 학군 및/또는 시스템 내 각 직위에 실제로 끼치는 영향

b. 수업 비용

- 학교에서 수령할 인당 예산 및 추가 기금

c. 행정

- 본 제안의 결과로서 직원 채용 및 신규 채용 증가 또는 감소에 끼치는 영향 설명
채용 감소가 예상될 경우, 기존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d. 교통

- 본 제안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던 통학 교통편(해당되는 경우)에 끼치는 영향

e. 시설 업그레이드(차터 스쿨인 경우)

- 1998 년(2010 년 5 월 개정) 뉴욕주 차터스쿨법에 의거하여, 어떤 학교 건물에 공존하는 차터스쿨에서 주요 개선 및 시설 업그레이드(\$5,000 를 초과하는)를 실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주요 개선 및 시설 업그레이드를 해당 건물 내 각각의 비 차터 학교에 행해야 한다. 제안된 업그레이드 평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교육감 규정 A-190 을 참고하십시오.

f. 기타 지원 서비스

VIII. 건물 정보

- 건물 유형: 1 차, 2 차
- 건축년도
- 전체 BCAS 등급
- 활용 & 수용인원 목표
- FY 2009 관리비용:
 - 인건비:
 - 자재비:
 - 관리 및 보수 계약:
 - 서비스 계약:
 - 청소비 (재료비, 청소원 배정):
- FY 2009 에너지 비용:
 - 전기
 - 가스
 - 기름
- 현재 또는 전 학년도에 완성된 프로젝트
- 캐피털 플랜에 제안된 프로젝트들:
-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인 경우 표시:
- 건물 시설 목록: 체육관, 강당, 과학실험실, 카페테리아, 도서관



학교명(DBN)의 건물명(코드)에서 건물명(코드)로의 재배치

I. 제안 내용 요약

- 식별 정보:
 - o 재배치 되는 학교명, 코드, 차터 또는 학군
 - o 시행 첫 해(단계적 확장안일 경우) 및 학교 수용 인원을 완전히 채웠을 때 매년 예상 재학생 수, 현재 교육 대상 학년(단계적 확장안일 경우) 및 학교 수용 인원을 완전히 채웠을 때 교육 대상 학년
 - o 차터 스쿨인 경우 승인 기관
 - o 현재 커뮤니티 학교 학군, 빌딩 코드 및 주소
 - o 제안된 신규 커뮤니티 학교 학군, 빌딩 코드 및 주소
 - o 공존하는 기존 학교명(들), 코드, 교육 대상 학년
- 본 제안의 결과로서 취해질 조치에 관한 설명:
 - o 학년(들), 재배치 되는 학교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추가될 학생수 및 학년 등을 포함하여 본 제안의 시행에 관한 정보. 학교가 아직도 단계적 확장 중이라면 이 기간 중 매년 추가되는 학년(들) 및 학생 수
- 제안된 조치의 정당성:
 - o 학교 재배치의 필요성과 본 제안이 그러한 필요를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관한 설명

II. 건물 활용 방안 또는 잠정적 활용안

- 건물에 관한 정보:
 - o 수용능력
 - o 현재 활용 상황
- 제안된 건물 활용방안에 관한 설명

III. 본 제안이 해당 학생, 학교 및 지역사회에 주는 영향

a. 학생

- 기존 학교 및 재배치 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
 - o 특수교육 (SE) 및 영어학습학생(ELL) (ELL)에게 끼칠 영향에 관한 설명과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해당되는 경우)
 - o 본 제안의 일부로서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중학교 초이스 프로그램 및 SE & ELL 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설명(해당되는 경우)

- 해당되는 경우, 기타 중대한 프로그램 상의 변화
- 학교의 현재 위치에서 제안된 신규 위치까지의 거리
-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장애인 신규 위치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 그리고 현재 학생들의 통학 교통 옵션(엘로 버스 또는 대중 교통)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
- 현재 재학생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관한 정보
- 기존 장소에 입학하였을 미래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b. 학교

- 해당 건물 내 학교들에 본 제안이 끼치는 영향:
 - 건물 내 있는 각 학교 별로 본 제안의 결과로서 수업 공간의 할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 또한 본 제안의 결과로서 건물 내 있는 다른 학교 재학생수의 직접적인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설명
 - 기존 학교(들) 및 재배치 되는 학교에 제안된 공간 할당에 관한 설명. 재배치 되는 학교가 아직도 단계적 확장 중이라면, 이 학교의 정원이 모두 찰 때까지 매년 공간 할당 계획에 관한 설명. 재배치 되는 학교가 차터 스쿨일 경우, 건물 활용 계획안 포함
 - 각 학교별 특수 교실(예, 컴퓨터 랩, 과학 실험실)의 장애인 편의시설
 - 적용되는 경우 체육관, 카페테리아, 도서실 및 놀이터 등의 공유 공간에 끼치는 영향 설명. 이러한 공간이 제안된 공존 학교들 간에 어떻게 공유될 지에 관한 예 포함
 - 건물의 안전 및 보안 계획에 끼치는 영향 설명
 - 해당되는 경우 계획된 주요 개선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제시
 - 학교의 현재 장소에 남아 있는 공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c. 지역사회

- 본 제안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설명:
 - 제공 가능한 정원 및 주변 학교에 끼치는 영향:
 - 등록 경향
 - 요구되는 수용인원
 - 신규 학교 유치, 학년 확장 및 단계적 학년 유치의 결과로서 지역사회에서 신설되는 정원
 - 프로그램 제공 능력에 끼치는 영향:
 - 재배치 학교에서 제공되는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및 중학교 초이스 프로그램 명시
 - 제안된 학교의 재배치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교육법 제 414 항에 의거하여 학교 건물 사용 허가를 얻는데 끼칠 효과(있는 경우) 설명

IV. 등록, 입학 및 학교 수행 정보

- 영향 받은 각 학교 별로 다음과 같은 정보 제공:
 - 등록 데이터
 - 현재 재학생 수 및 교육하는 학년
 - 신설 학교 학생 수 전망치(해당되는 경우)
 - 입학 및 지원자격 기준
 - 인구 정보
 - 폐교 대상 학교의 단계적 폐교 조치가 실행되는 해부터 완전 폐교되는 해까지 매년 교육 대상 학년과 예상 재학생 수
 - 수행 데이터:
 - 진척 보고서 성적
 - 졸업률 및/또는 ELA/수학 점수
 - 주 책임 현황
 - 평균 출석률 및 출석 리포트 링크

V. 초기 비용 및 절감 비용

- 학교들의 예산 구성에 관한 정보 제공
- 이전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해당되는 경우)

VI. 개인적 필요, 수업, 행정, 교통 및 기타 지원 서비스 비용에 끼치는 영향

a. 개인적 필요

- 본 제안의 결과로서 신설되거나 소멸될 행정직, 비 교직 및 교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
- 학군 및/또는 시스템 내 각 직위에 실제로 끼치는 영향

b. 수업 비용

- 학교에서 수령할 인당 예산 및 추가 기금

c. 행정

- 본 제안의 결과로서 직원 채용 및 신규 채용 증가 또는 감소에 끼치는 영향 설명
 채용 감소가 예상될 경우, 기존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d. 교통

- 본 제안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던 통학 교통편(해당되는 경우)에 끼치는 영향

e. 주요 개선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차터 스쿨인 경우)

- 1998 년(2010 년 5 월 개정) 뉴욕주 차터스쿨법에 의거하여, 어떤 학교 건물에 공존하는 차터스쿨에서 주요 개선 및 시설 업그레이드(\$5,000 를 초과하는)를 실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주요 개선 및 시설 업그레이드를 해당 건물 내 각각의 비 차터 학교에 행해야 한다. 제안된 업그레이드 평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교육감 규정 A-190 을 참고하십시오.

f. 기타 지원 서비스

VII. 건물 정보

- 건물 유형: 1 차, 2 차
- 건축년도
- 전체 BCAS 등급
- 활용 & 수용인원 목표
- FY 2009 관리비용:
 - o 인건비:
 - o 자재비:
 - o 관리 및 보수 계약:
 - o 서비스 계약:
 - o 청소비 (재료비, 청소원 배정):
- FY 2009 에너지 비용:
 - o 전기
 - o 가스
 - o 기름
- 현재 또는 전 학년도에 완성된 프로젝트
- 캐피탈 플랜에 제안된 프로젝트들:
-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인 경우 표시:
- 건물 시설 목록: 체육관, 강당, 과학실험실, 카페테리아, 도서관



학교명(들) (DBN)의 학년 재구성

I. 제안 내용 요약

- 식별 정보:
 - 학교명, 코드 (DBN), 현재 교육 대상 학년들 및 재구성이 완료되었을 때 제안되는 교육대상 전학년
 - 커뮤니티 학교 학군, 빌딩 코드 및 주소
 - 현재 같은 건물에 있는 학교들(있는 경우)
- 본 제안의 결과로서 취해질 조치에 관한 설명
 - 매년 소멸되거나 신설될 학년
- 제안된 조치의 정당성
 - 학년 재구성의 필요성과 본 제안이 그러한 필요를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관한 설명

II. 건물 활용 방안 또는 잠정적 활용안

- 건물에 관한 정보:
 - 수용능력
 - 현재 활용 상황
- 제안된 건물 활용방안에 관한 설명
 - 제안된 건물 활용안에 추가 학교를 유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경우, 학교 유치에 관해서는 EIS 참고

III. 본 제안이 해당 학생, 학교 및 지역사회에 주는 영향

a. 학생

- 건물 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
 - 특수교육 (SE) 및 영어학습학생(ELL) (ELL)에게 끼칠 영향에 관한 설명과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해당되는 경우)
 - 현재 학교 건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제공 가능한 등록 옵션에 관한 설명(전학 기회 여부 포함)
 - 해당되는 경우 본 제안의 일부로서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중학교 초이스 프로그램 및 SE & ELL 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설명
 - 해당되는 경우, 기타 중대한 프로그램 상의 변화

b. 학교

- 해당 건물 내 학교들에 본 제안이 끼치는 영향
 - 건물 내 있는 각 학교 별로 본 제안의 결과로서 수업 공간의 할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 또한 본 제안의 결과로서 건물 내 있는 다른 학교 재학생 수의 직접적인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설명
 - 본 제안의 결과로서 공간이 더 생길 경우, 그것의 잠재적 활용 방안

c. 지역사회

- 본 제안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설명.
 - 학년 레벨 수용력에 전반적으로 끼치는 영향의 정당성
 - 본 제안 및 기타 단계적 폐교/또는 학년 재구성안이 해당 학군 내 학년 레벨 정원에 끼치는 실질적인 영향
 - 각 학교, 각 학년 레벨의 정원 감소 또는 증가
 - 학군 내 제공 가능한 정원에 끼치는 영향 설명
 - 제안된 학년 재구성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교육법 제 414 항에 의거하여 학교 건물 사용 허가를 얻는데 끼칠 효과(있는 경우) 설명

IV. 등록, 입학 및 학교 수행 정보

- 영향 받은 각 학교별로, 또는 제안된 학년 재구성안 대상인 학교에 대하여 다음 정보 제공:
 - 등록 데이터
 - 현재 재학생 수 및 교육하는 학년
 - 입학 및 지원자격 기준
 - 인구 정보
 - 폐교 대상 학교의 단계적 폐교 조치가 실행되는 해부터 완전 폐교되는 해까지 매년 교육 대상 학년과 예상 재학생 수
 - 수행 데이터:
 - 진척 보고서 성적
 - 졸업률 및/또는 ELA/수학 점수
 - 주 책임 현황
 - 평균 출석률 및 출석 리포트 링크

V. 초기 비용 및 절감 비용

- 학교들의 예산 구성에 관한 정보 제공
- 이전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해당되는 경우)

VI. 개인적 필요, 수업, 행정, 교통 및 기타 지원 서비스 비용에 끼치는 영향

a. 개인적 필요

- 본 제안의 결과로서 신설되거나 소멸될 행정직, 비 교직 및 교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
- 학군 및/또는 시스템 내 각 직위에 실제로 끼치는 영향

b. 수업 비용

- 학교에서 수령할 인당 예산 및 추가 기금

c. 행정

- 본 제안의 결과로서 직원 채용 및 신규 채용 증가 또는 감소에 끼치는 영향 설명 채용 감소가 예상될 경우, 기존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d. 교통

- 본 제안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던 통학 교통편(해당되는 경우)에 끼치는 영향

e. 기타 지원 서비스

- 제안된 학년 재구성안이 기타 지원 서비스에 끼치는 영향 설명

VII. 건물 정보

- 건물 유형: 1 차, 2 차
- 건축년도
- 전체 BCAS 등급
- 활용 & 수용인원 목표
- FY 2009 관리비용:
 - o 인건비:
 - o 자재비:
 - o 관리 및 보수 계약:
 - o 서비스 계약:
 - o 청소비 (재료비, 청소원 배정):
- FY 2009 에너지 비용:
 - o 전기
 - o 가스
 - o 기름

- 현재 또는 전 학년도에 완성된 프로젝트
- 캐피털 플랜에 제안된 프로젝트들:
-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인 경우 표시:
- 건물 시설 목록: 체육관, 강당, 과학실험실, 카페테리아, 도서관